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53,515,972	19,605,479
일반회계		622,916,395	18,687,492
특별회계		30,599,577	917,987
기타특별회계		30,599,577	917,98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961,031	28,831
	건축진흥특별회계	470,000	14,1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017	90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167,776	215,033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369,313	191,07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94,159	5,825
	수질개선특별회계	65,930	1,97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35,766	22,073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133,614	4,00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794,102	233,823
	상수도특별회계	6,677,869	200,33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68,95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